

○ 國民投票附議權

○ 現行: 547

第 47 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·國防·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.

○ 民主黨: 571
現行과 같음

○ 民主黨: 574

第 74 條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·國防·統一 其他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.

○ 國民投票制度는 重要政策의 결정에 있어서 政略的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主權者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國會에 의한 代議制 政治原理를 보완하려는 것이나

○ 연혁적으로 보아 統治者에 대한 信任投票로 사용되어 權力專斷의 길을 열어준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(나폴레옹 3세, 히틀러등) 國家의 安危와 직결되는 문제등에 한하여 극히 制限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.

第 2 共和國例

第 7 條의 2 大韓民國의

主權의 制約 또는 領

土의 變更을 가져올

國家安危에 관한 重大

事項은 國會의 可決을

거친 후에 國民投票에

附하여... (이하생략)

[維新憲法]

第 49 條 大統領은 필요

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
國家의 重要한 政策을

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.

* 維新憲法 전문이 아니라 國民投票制가 濫用된 事例이 있어 第 2 共和國例 憲法에 限定的으로 規定하였음